

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1. 17.

발 의 자 : 김 화 영 의원 외 4인

1. 제안이유

2011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.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-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